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한 선 미 의원)

의안 번호	24-7
----------	------

발의년월일 : 2024. 2. .

발의자 : 한선미,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안미자, 장정희, 차해영, 채우진

1. 개정이유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위하여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는 경우, 통·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세대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통장 위·해촉 시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해촉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함. 이외에 현재 운영 상황에 맞게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통·반의 조직(안 제2조)

-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세대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함.

나.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안 제5조)

-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고,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시에 위·해촉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함.

다. 편의제공(안 제10조)

-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함.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4. 2. 8. ~ 2.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이하의 규모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이하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반은”을 “1개반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과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세대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반장을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촉한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6항제1호 중 “이주하였을”을 “이주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위촉받은 통장”을 “통장”으로 한다.

2.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통·반 조직을 통합·폐지한 때
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출국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동주민센터의 공문서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통·반의 조직) ① (생략)</p> <p>② <u>1개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의 규모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p> <p>③ <u>반은 40세대 이상 80세대 이하의 규모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u></p> <p><u><신설></u></p>	<p>제2조(통·반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이하로 구성한다.</u></p> <p>③ <u>1개반은 -----</u> ----- . <u><단서 삭제></u></p> <p>④ <u>제2항과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세대수를 가감할 수 있다.</u></p>
<p>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 ④ (생략)</p> <p>⑤ 삭제</p> <p>⑥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반장을 동장이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u></p>	<p>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⑥ <u>동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반장을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촉한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u></p>

1. 해당 통·반이 아닌 다른 지역
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신 설>

2. (생략)

3. 위촉받은 통장 또는 반장이 제7
조에서 규정한 임무를 직접 처
리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제3자
에게 처리케 하여 물의를 야기
한 경우

<신 설>

4.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6. (생략)

제10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구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
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② (생략)

다.

1. -----
-- 이주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

2.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 사
업 등으로 통·반 조직을 통합
· 폐지한 때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통장 -----

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
출국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
음)

제10조(편의제공) ① 구청장은 통·
반장에게 동주민센터의 공문서 무
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
공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일부개정]

-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강혜영
연 락 처	02-3153-8303